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469

발의연월일: 2020. 10. 8.

발 의 자:이용빈·고영인·민형배

송영길 • 윤준병 • 이상헌

이용선 · 이탄희 · 장경태

조오섭 · 한병도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공 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 위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 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, 현장점검 등 '의견수렴'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, 최근맥스터(조밀건식저장시설) 증설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찬반을 두고지역간 격렬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.

하지만 일본,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

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.

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의무화하고,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,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3조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"를 "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,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"를 "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,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을 주민의견수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3조(주민의 의견수렴) ① 다	제103조(주민의 의견수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신청	
자"라 한다)는 제10조제2항·제5	
항,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	
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	
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	
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	<u>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</u>
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	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
<u>을 개최하여</u> 위원회가 정하는	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
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	하게 하여야 하며, 공청회 등을
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	<u> 개최하여</u>
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. <u>이</u>	
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	
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	<u><</u> 후단
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	<u>삭제></u>
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	
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	②
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	
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	
때 제3항에 따른 <u>해체계획서</u>	<u>해체계획서</u>

호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 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. 이 경우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 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초	안을	- 온	라인	정	보급	당개	및	관
<u>런</u>	기	방자	치단치	ब्री :	제공	7을	통さ	하여
공	람히	게	하여	야	하	며,	공>	청회
등	을	개최	리하여					
						(후	단	삭
제)	>							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을 주민의견수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<u>⑤</u>·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